

인천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2242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변론 종결2023. 10. 24.

판결 선고2023.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에, C가 D 주식회사에게 가지는 100,000,000원의 매출채권, 주식회사 E에게 가지는 50,000,000원의 매출채권, F 주식회사에게 가지는 50,000,000원의 매출채권에 관하여 각 2022. 12. 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C에게 194,526,643원의 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2022. 12.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청구취지 기재 각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각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채권자 중 하나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위 각 매출채권의 추심을 완료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각 매출채권액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존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 26. C에 200,000,000원을 이자 연 20%로, 그 중 100,000,000원의 변제기는 2022. 10. 25., 100,000,000원의 변제기는 2022. 12.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 중 배당금 약정서, 주식양도계약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2022. 10. 31. C에게서 원리금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 시 C로부터 C 주식 및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5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시 작성된 차용증서에 "채무자(C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유하는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권리권한을 채권자(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채무자는 150,000,000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건물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와 피고의 채권양도계약일인 2022. 12. 1. 당시 C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C 주식에 대한 이전절차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등 담보제공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계약일 당시 C가 오산시 G 외 1필지상 오산물류센터 창고의 전차인으로서 전대인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갑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C가 2022.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출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변제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고, C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매출채권에 관한 2022. 12. 1.자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는 2021. 11. 1.부터 C와 물류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고, 피고의 C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미수금 물류비 채권은 2022. 10. 24. 기준 242,809,498원, 2022. 11. 7. 기준

312,392,527원, 2022. 11. 24. 기준 380,964,147원에 달하였다.

○ 피고는 2022. 10. 24., 2022. 11. 7., 2022. 11. 24. 각 C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 C는 2022. 10. 17. 피고에게 당시까지의 미지급 물류비 242,809,409원 중 50,000,000원을 2022. 10.경까지, 나머지 금액을 2022. 1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 C가 그 무렵 피고에게 고지한 C의 채무 현황에는 피고에 대한 물류비 채무 외에 'I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 J에 대한 채무 2억 원'만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22. 11.경 K에 C의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였다. K는 피고에게 2022. 11. 30. 기준으로 C의 신용평가등급에 관하여 'BB등급으로,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이라는 의견을, C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2021. 매출액은 104억 2,100만 원(당기순이익 2억 4,900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 C가 2022. 11.경 피고에게 제공한 2022. 10. 매출 현황에는 매출액이 약 10억 42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은 모두 위 자료에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자료에 기재된 총 30여 군데의 거래처 중 매출채권액이 가장 많은 6군데의 거래처들에 속해 있다.

○ 피고와 C 사이에 물류대행서비스 계약관계 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 또는 구성원 사이의 인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항미정